

## 돌봄 관점에서 본 이중빈곤연구의 의의와 한계

신영민\* · 김희강\*\*

### 요약

이 논문은 돌봄 관점에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연구를 평가하고 이중빈곤연구가 돌봄을 고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중빈곤연구는 다중불평등 문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 부담과 같은 문제의식을 돌봄 관점과 공유한다. 또한 돌봄노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일자리의 노동조건개선, 유배우자 여성가구주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를 언급하는 점 등에서 시간과 불평등 연구만이 아니라 돌봄 논의에도 일정한 함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빈곤연구가 돌봄 관점을 보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분석과정 내에서 돌봄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함의에서도 노동과 돌봄에서의 성별 및 계층별 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빈곤연구는 돌봄을 잔여적으로 간주하는, 즉 기존에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돌봄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분석 아이디어로 빈곤 유형별 돌봄시간 비중과 돌봄분담률 등을 제시하며,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돌봄'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이중빈곤, 시간빈곤, 돌봄이론, 함께 돌봄, 돌봄분담률

\* 주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ymshin@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heekangkim@korea.ac.kr)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dual poverty of time and income) 연구를 돌봄(care)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할 지점을 논하는 것이다. 시간과 소득 두 자원이 모두 빈곤한 상황을 지칭하는 이중빈곤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는 전통적인 빈곤연구가 소득에 국한된 일차원적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시간을 고려한 다차원적 빈곤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중빈곤 상황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재생산과 사회적 배제를 비판한 것이다(Vickery, 1977; Bittman, 1999; Burchardt, 2008). 둘째는 이중빈곤의 원인인 여성에게 지워지는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을 비판하고 가구 내의 젠더화 된 가사노동분담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Warren, 2003;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중빈곤 연구는 가구의 유형과 구성이 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소득과 시간의 일반적인 대체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중빈곤 영역이 성별, 계급과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중적 빈곤의 해결을 위한 여성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의미가 있다(Vickery, 1977; Bittman, 1999;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노혜진·김교성, 2010; 오혜은, 2017).

문제의식, 주요 내용, 함의를 검토해 볼 때, 이중빈곤연구는 돌봄의 관점과 적지 않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중빈곤연구는 성별, 계층 간 불균등한 노동·시간배분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 배분의 젠더화와 시장화, 이로 인해 돌봄제공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과 돌봄에 대한 저평가를 비판하는 돌봄이론의 논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중빈곤 상황이 야기하는 빈곤의 대물림과 불평등 강화는 돌봄의 불평등으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의 이전을 비판하는 돌봄 관점과도 유사하다. 정책적 대안에서도 시간빈곤에 취약한 유배우자 여성가구주에 대한 돌봄서비스 접근 확대와 여성일자리 노동조건 개선은 사회적 돌봄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이 돌봄노동의 개선과 가치 재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관점에서 볼 때 이중빈곤연구가 여전히 간과한 몇몇 지점이 있다. 이러한 지점을 논의하고 고려 가능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표이다. 문제제기와 대안적 논의에 비하여 연구과정 내에서 돌봄은 가사노동의 한 범주로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돌봄시간과 돌봄분담을 빈곤유형과 연결하려는 이 글의 시도는 이중빈곤연구가 제시하는 함의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돌봄 관점으로 이중빈곤의 개선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일자리 개선과 유배우 여성가구주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이중빈곤연구의 결과는 돌봄 가치의 평가재고와 돌봄제공자의 부담완화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

만 돌봄이 인간의존의 사실(fact of human dependency)에서 비롯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피할 수 없는 실천이자 의무이며 권리이기에 사회적 돌봄, ‘함께 돌봄(caring with)’을 강조하는 돌봄 관점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개선책은 여전히 젠더화된 돌봄을 문제 삼지 않고 돌봄에 대해 잔여적 시각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돌봄 관점을 반영한 이중빈곤연구를 고민하는 동시에, 돌봄에 민감한(care-sensitive) 정책적 논의의 저변을 마련하고 돌봄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의 결과와 정책을 평가하는 사례를 보이는 것이 이 글의 종국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이중빈곤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로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돌봄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1980년대 이후 논의된 돌봄윤리(care ethics)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지만 여기서는 최근 논의 중 정치사회적 함의에 주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돌봄의 성격과 돌봄이 사회적으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 등에서 이견은 있지만, 이 글은 돌봄연구자들이 대체로 강조하는 공통된 측면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3장에서는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개념을 소개하고 이중빈곤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소개한다. 4장에서는 이중빈곤연구가 돌봄에 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관점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돌봄 관점이 이중빈곤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논한다.

## 2. 돌봄 관점

이 장에서는 최근에 논의되는 돌봄이론을 토대로 이중빈곤연구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인 돌봄 관점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돌봄 관점을 살펴볼 것이며, 이 장에서 언급하는 돌봄의 측면은 3장과 4장에서 이중빈곤연구를 분석함에 있어 이론적 준거로 활용될 것이다. 돌봄을 규범적인 정책평가의 근거로 도입한 논의는 돌봄윤리가 출발점이 되었다(김희강, 2016: 62-95; 송다영·장수정·백경훈, 2017; 백경훈·송다영·장수정, 2017). 돌봄윤리의 초기 저작들은 남성의 도덕발달기준에 중심을 둔 기존의 발달심리이론을 비판하거나 관계적 맥락에서 타자에 대한 돌봄(배려)이 도덕성의 원천이라는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Gilligan, 1997; Noddings, 2018), 이후 논의들은 점차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왔다. 따라서 돌봄이론 논의를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돌봄이론 중 보다 정책적인 함의에 방점을 두는 논의를 중심으로 돌봄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 관점은 돌봄을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실천이자

활동으로 간주한다(김희강, 2018: 204). 물론, 학자들마다 돌봄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sup>1)</sup> 또한 돌봄의 양상은 사회와 문화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인간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실천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 점에서 돌봄은 ‘개인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개인서비스’란 본인 스스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제공하는 활동인 반면, 돌봄은 취약한 인간이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필요에 응답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Tronto, 2014: 71-72). 식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이지만,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주고 씻기는 일은 돌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의 정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탄생과 함께 그 어떤 동물보다도 부모 또는 다른 조력자에 의하여 “생명이 보존되고 양육되기를 요구한다.”라는 점에서(Ruddick, 2002: 60), 돌봄 관점은 ‘인간의존의 사실’이라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성에 기초한다(Kittay, 2016: 81-82).

둘째, 돌봄 관점은 저평가된 돌봄에 대한 제고를 요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돌봄은 인간의 생존 및 유지·발달을 위해 누군가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제공해야 만하는 실천이다. 그럼에도 돌봄은 가정에서 여성이 하는 일,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일, 부가가치로 측정이 어려운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 간의 많은 시간 및 에너지, 감정적 교류를 요구하는 돌봄의 특성은 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돌봄이 체계적으로 낮게 평가되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다(Folbre, 2007: 107-108; 윤자영, 2018b: 43-48). 가정의 영역을 벗어난 시장에서의 돌봄 역시 유사한 이유로 저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가사노동과 가구 내 돌봄 영역은 경제적 지표로 산출되지 않는 동시에 교육 및 의료,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소위 돌봄 산업의 노동은 저임금 및 높은 이직률 등 열악한 조건을 보인다. 돌봄의 관점은 사랑과 의무, 호혜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에 기반 한 돌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간과되어 온 지점을 비판하면서 돌봄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를 요구한다(Folbre, 2007; Tronto, 2014).

1) 예를 들면, 트론토(Joan Tronto)가 “세상에서 잘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돌봄을 정의한다면(Tronto, 2014: 67), 잉스터(Daniel Engster)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유지하며,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충을 피하거나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돌봄을 표현한다(Engster, 2017: 63). 다시 말해, 전자가 세상을 지속·유지시키기 위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으로 돌봄을 폭 넓게 보았다면, 후자는 인간의 필요충족과 역량의 발달·유지를 위해 인간이 직접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돌봄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누군가는 또한 필연적으로 돌봄을 제공했다는 사실, 즉 우리 모두는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라는 사실은 돌봄을 사회적이고 공적인 가치로 다루게 한다(Kittay, 2016: 75). 나딩스(Nel Noddings)의 지적과 같이,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대면으로 구성되는 돌봄의 성격은 그 자체로 사적일 수 있다(Noddings, 2018: 99). 그러나 개인과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에 돌봄의 실천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돌봄을 사적 문제를 넘어 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슈로 상정시킨다. 물론, 돌봄이론가들 마다 돌봄이 사회적으로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견지한다. 예를 들면, 잉스터(Daniel Engster)는 돌봄의 필요가 영유아와 노년기, 장애와 상해에서와 같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신이 온전할 때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항시적 의존(consistent dependency) 때문에 잉스터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 공동체의 타자로까지 돌봄을 배분해야 하며, 개별 돌봄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적 돌봄책임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Engster, 2017: 127-133). 이 때,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것과 같이 잉스터에게 있어 집단적 돌봄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정부이며, 돌봄정부는 사회 전반의 돌봄활동과 조직을 보충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예로,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불편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주의가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돌봄책임을 돌봄제공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결핍과 돌봄의 결핍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트론토(Joan Tronto)의 입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만 ‘함께 돌봄(caring with)’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Tronto, 2014). 한편 커테이(Eva Kittay)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를 돌보는 돌라(doula)와 같이 돌봄제공자가 겪는 2차 의존을 지원하는 조달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형태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정부의 성격, 사회적 돌봄 혹은 ‘함께 돌봄’을 하는 형태와 수준 등에 있어 돌봄 관점 내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적어도 돌봄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도덕의 탐구대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고,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정책 이슈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돌봄 관점은 상정한다.

넷째, 돌봄을 공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에 돌봄이 분배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한다. 즉, 돌봄의 관점은 돌봄을 사적 영역으로 주변화(marginalize) 시키는 방식이나 성별분업을 기초로 돌봄이 젠더화되는 방식에 비판적이다. 특히, 돌봄의 시장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낳는다. 첫째, 앞서 언급한 ‘돌봄의 저평가’의 연장선에서, ‘경쟁적 돌봄’은 돌봄비용의 상승을 억제하여 돌봄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게끔 하고 돌봄의 젠더화를 가중시킨다.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나 민간요양원·민간보육원 등 ‘경쟁적 돌봄’은 자원할당의 측면에서

돌봄노동자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시키고, 돌봄노동 대부분을 여성 및 낮은 계급과 지위의 사람에게 이전시킨다(Folbre, 2007: 93-96; Tronto, 2014: 198-199).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양육 돌봄노동의 비숙련 노동자 대부분이 유색인종, 이주민 노동계층의 여성이며 상당수가 불안정 노동자(precariat)라는 점은 돌봄이 저소득 여성에게 가중되는 기피노동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윤자영, 2018a).<sup>2)</sup> 둘째, 이러한 ‘경쟁적 돌봄’은 돌봄의 질 역시도 하락시킨다. 왜냐하면 민간의 돌봄기관이 수익을 우선가치로 삼게 되면서 돌봄수혜자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는 동시에, 돌봄제공자의 필요 역시 충족시키지 못하는 ‘질 낮은 돌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폴브레(Nancy Folbre)는 돌봄이 민간의 시장화 된 서비스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미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이 돌봄의 주변화와 젠더화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Folbre, 2007: 54-91).<sup>3)</sup>

다섯째, 돌봄 관점은 돌봄의 불평등에 비판적이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이로 인한 특정 성별·계층의 돌봄전담, 그 결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수혜자에 가해지는 실질적 위협뿐만 아니라, 돌봄의 사적화가 야기하는 또 다른 부정의한 문제는 돌봄의 불평등이다. 돌봄노동을 금전적 가치로 내모는 것은 매일 매일의 좋은 돌봄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Kittay, 2016: 206)를 만드는 동시에, 사회구조가 불평등을 생산하고 영구화하는 방식을 감춘다(Tronto, 2014: 236). 소득과 시간이 충분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혹은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좋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생존의 보장마저 위태로운 경우도 있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부족한 시간을 소득으로 대체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돌봄서비스의 공급자는 주로 저소득층 여성이다. 이들 저소득층 여성은 자신의 자녀를 돌볼 충분한 시간도 양질의 돌봄노동을 구매할 충분한 소득도 여의치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이 지속되는 동시에 돌봄의 불평등 역시도 세대 간에 재생산된다(Tronto, 2014: 250-259). 돌봄 불평등의 재생산과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좋은 돌봄을 받을 권

2) 이러한 맥락에서 케테이는 최근 발표에서 돌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을 돌봄제공자의 불안정성(precarioussness)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다(Kittay, 2018). 그녀는 가이스탠딩(Guy Standing)이 제시한 불안정성(precarity)과 노동자(proletariat)의 합성어인 불안정노동자(precariat) 개념 및 버틀러(Judith Butler)가 제시한 권력과 폭력에 불안정한 삶(precarius life) 개념을 적극 수용한다.

3) 돌봄의 시장화를 남성이 담당하는 치안과 비교하여보면, 미군이 모병제에 의존함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종사자가 학력과 부모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남성으로 구성되는 점과 일견 공통점이 있다. 그다지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기피 노동을 지불되는 임금의 형태로 보상함으로써 특정한 계층에게 국방의무를 맡기는 것과 돌봄의 사적 서비스가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라는 수사로 우상화 되는 동시에 높은 임금으로 보상되는 반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보모국가(nanny state)”로 폄하 되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며 “남성의 일 = 공적이고 생산적이며 가치있는 일,” “여성의 일 = 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하찮은 일”이라는 개념적 연결쌍이 암묵적인 전제로 통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Folbre, 2007).

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의한 것이다.

요약하건대, 돌봄 관점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관점은 돌봄을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실천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의는 취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에 기초한다. 둘째, 돌봄 관점은 기존에 시장과 사회에서 저평가된 돌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셋째, 돌봄 관점은 돌봄을 사회적인 것이며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로 다룬다. 적어도 돌봄을 사적인 영역, 가정의 영역에만 남겨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넷째, 돌봄의 관점은 돌봄을 사적 영역으로 의존시키거나 성별분업을 기초로 돌봄이 젠더화 되는 방식에 비판적이다. 특히 돌봄의 시장화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절하시키고 돌봄노동의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돌봄 관점은 돌봄의 사적 시장화와 돌봄의 젠더화는 돌봄의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를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며, 이는 돌봄의 불평등을 낳고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돌봄이론의 시각으로 이중빈곤연구의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이중빈곤 및 시간빈곤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구의 문제의식, 주요 결과, 이중빈곤에 대한 정책적 함의의 순서로 고려하면서 어떠한 지점에서 돌봄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또한 논의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돌봄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지 논의한다.

### 3. 이중빈곤연구와 돌봄에 대한 고려

이중빈곤연구는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연구에 있어 소득에 기초한 전통적인 빈곤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된다(Merz and Rathjan, 2009: 5). 상대적 결핍이라는 의미에서 빈곤은 자원 부족이 야기하는 일상적인 삶의 여러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소득에만 한정시킨다면 다양한 배제의 측면을 살펴볼 수 없다(Bittman, 1999: 2). 특히 센(Amartya Sen)의 빈곤 연구는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극단적인 경제적 빈곤이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약한다는 그의 연구는 소득만이 아니라 교육에서의 불평등, 건강, 실업과 일자리의 불평등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촉발시켰다(Sen, 1999: 90; Atkinson, 2003). 삶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소득과 함께 시간은 1) 모든 인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제약한다는 점, 2) 어떠한 활동이든 소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다중적 불평등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다(Burchardt, 2008; Merz and Rathjan, 2009). 이와 유사하

계, 이중빈곤연구의 선구자인 비커리(Clair Vickery)는 소득만을 빈곤 원인으로 고려하여 가계 조사를 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한다면, 가구 간 시간불평등을 방치하는 동시에 시간부족은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정 유형의 가구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Vickery, 1977: 29).

이중빈곤이 시간과 소득의 동시적 부족 상황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중빈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빈곤(time poor)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sup> 시간빈곤은 측정에 따라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i) 전체 시간에서 필수시간(necessary time)과 헌신시간(committed time)을 차감한 보유시간이 유급노동시간보다 적거나 (ii) 필수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차감 후 가구유지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로 자유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자유시간의 특정기준(보통 중위값의 50~60%수준) 이하인 경우 혹은 유·무급 노동시간이 특정기준(중위값의 1.5~2배) 이상인 경우”이다(전자의 경우 Vickery, 1977; Douthitt, 2000; Harvey and Mukhopadhyay, 2007가, 후자는 Bardasi and Wodon, 2006 등이 해당함).

시간빈곤 측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생활시간조사 내지 시간활용조사의 행동을 아스(Dagfinn Ás)가 제시한 행동분류를 활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아스는 시간의 종류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Ás, 1978: 134):

- 1) 수면, 세면 등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시간(necessary time):  $T_n$
- 2) 규칙적인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계약시간(contractured time):  $T_l$
- 3)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등 개인이 선택하기에 앞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헌신시간(committed time):  $T_c$
- 4) 상기의 활동을 제외한 자유시간(free time):  $T_f$

절대적 기준은 가구별 주당 전체시간(1인당 168시간, 2인 가구의 경우 336시간)에서 (i) 필수시간( $T_n$ )과 유급노동시간( $T_l$ )을 제한 후 남은시간이 가구유지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거나( $T_c+T_f/T_c$ ) 혹은 (ii) 전체시간에서 필수시간( $T_n$ )과 헌신시간( $T_c$ )을 차감 후 남은시

4) 시간빈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시간 압박이나 노동시간 미스매치(miss match of working time), 과잉 노동시간(over employment of working time), 시간압박, 시간스트레스 등 유사한 개념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가령 노동시간 미스매치 및 과잉 노동시간은 “개인이 희망하는 주당노동시간과 실제 노동시간 간의 격차”를 표현하는 것으로 유급노동시간에 한정된 개념이다(Lee, 2009). 이는 무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시간 기근(time famine), 시간압박, 시간 스트레스 등은 “개인이 일상 중에 체험하는 시간부족감”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주관에 기초한다(대표적으로 Hamermesh and Lee, 2007; Kalenkoski and Hamrick, 2013). 반면 시간빈곤은 유급 노동시간과 무급 가사노동시간을 모두 포함하면서 시간활용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측정하려한다.

간이 노동시간보다 적은 상황( $T1+Tf/T$ )을 의미한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따라서 두 상황 모두 자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표현하며, 현신시간은 보통 전업주부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는 맞벌이를 하거나 독신인 경우 가사노동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 기준은 남은 보유시간을 자유시간으로 보고 자유시간의 평균과 분포를 계산한 후 중위값의 50%~60%를 시간빈곤 기준선(threshold)으로 설정한다.

다만 여기서도 알 수 있듯 절대적 방식은 1) 현신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다소간 자의적인 삽입이 발생한다는 문제, 2) 차감해야 할 가사시간이 전업주부의 평균 현신시간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시간빈곤 여부는 가구의 유급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가구의 가사노동이나 돌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 가구 특성으로 고려되는 것은 배우자 유무와 자녀 유무만이기에 때문에 가구 내에서 배우자 간 가사노동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돌봄수혜자가 몇 명인지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충분한 가사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평균화한 개인의 필수유지시간은 적절한지라는 문제도 있다. 이 점에서 절대적 정의에 입각한 연구 중 일부는 현대인들이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필수시간에 1주일당 10~14시간을 더하지만, 이러한 측정이 자의적인 것은 사실이다(Vickery, 1977; Harvey and Mukhopadhyay, 2007). 때문에 최근 연구는 상대적 기준을 주로 활용하는데, 상대적 기준은 반대로 어떤 자료를 사용하든 빈곤 유형별 빈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시간빈곤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다는 점은 일련의 비판을 받았다. 시간빈곤 연구의 기본 모형 중 하나인 베커(Gary Becker)의 시간배분이론(time allocation theory)은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가구 내 생계부양자가 모든 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상태(full income)에서 각각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의 수요에 따라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 분석한다. 이에 대하여 일단의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이타성과 호혜성, 협력과 갈등, 협상, 고정된 성역할 관념 등 시간배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내 요인들을 시간배분이론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였다(Folbre, 2004;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Zilenawela, 2013). 가구 내 성별분업에 있어서 맞벌이 가구의 여성과 한부모 가구의 여성은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 여성은 시간과 소득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Kes and Swamiethan, 2006; Warren, 2003). 가구단위의 분석은 이 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련의 연구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하며, 소득과 성별에 따른 시간빈곤과 이중빈곤 유형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가구 단위 분석이 성불평등 문제를 전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니다. 가령 비커리는 여성과 남성가구주 비교 시 14세 이상 자녀가 있어도 여성의 저임금 비중이 더 크다는 점,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간빈곤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Vickery, 1977). 하지만 개인 단위의 분석은 성별분업으로 인한 여성의 시간빈곤 열악함을 보다 더 잘 보여준다. 개인 단위 분석의 주요 연구 결과는 여성이 주말과 주중 모두 자유시간이 남성에 비하여 부족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참여와 여가생활 역시 부족하다는 점(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Bittman, 1999),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가구가 시간빈곤의 위험이 가장 높으며 전통적인 젠더레짐 하에서 여성의 시간빈곤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Zilenawela, 2013), 경제적 저발전 상태에서는 특히나 여성에 대한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이 심각하다는 점(Kes and Swamiethan, 2006; Bardasi and Wodon, 2010)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성별만이 아니라, 이중빈곤의 문제가 계층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여성은 이중빈곤에 특히 취약하다(Zilenawela 2013; Bittman 1999, Warren 2003). 이러한 점에서 이중빈곤은 계급과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보여준다(노혜진, 2013: 63). 이는 국내의 주요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가구 단위의 분석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위험성이 높으며(노혜진·김교성, 2010),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에서도 여성이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김진욱·고은주, 2015; 오혜은, 2017).

다중적 불평등과 여성·저소득층에게 가해지는 이중적 부담이라는 이중빈곤연구의 문제의식은 앞서 설명한 돌봄 관점의 측면 중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사항, 즉 돌봄 불평등으로 인한 불평등의 재생산과 돌봄의 시장화 및 젠더화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제기는 빈곤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재생산이다. 이중빈곤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으로는 상충관계(trade-off)인 시간과 소득이 모두 부족한 경우를 발생시키며, 이는 장시간 노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구의 생산활동 및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소득 빈곤을 심화시키고 세대 간 빈곤을 대물림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Vickery, 1977: 46). 이중빈곤연구에서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의 시간”은 돌봄 관점에서 돌보는 시간(돌봄시간)이다. 이중빈곤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돌봄과 교육을 위한 시간까지 부족하게 만듦으로써, 빈곤을 대물림하고 좋지 못한 돌봄 역시도 세대 간에 이전되게끔 만든다. 이와 유사하게 트론토는 돌봄을 사회적으로 다루지 않는 결과 발생하는 돌봄의 시장화와 개인화가 계급과 지위에 따라 직접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여유가 있는 사람, 개인의 자원을 통하여 돌봄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돌봄을 떠맡아야 하는 사람 간의 차등적인 돌봄 불평등을 만들며 동시에 돌봄 질의 불평등 역시 초래함을 지적한다(Tronto, 2014: 192-259).<sup>5)</sup> 그리고 그

5) 트론토(2014)는 돌봄을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로 이해하면서, 돌봄의무에서 배제되는 다섯가지 형태의 무임승차(passes)를 언급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로 남성이 국방과 치안, 생산의 일을 맡으면서 취하는 보호형 무임승차와 생산형 무임승차이다. 그리고 다른 무임승차 형태로

결과 돌봄의 차이가 시민으로 살아갈 역량의 차이를 만드는 동시에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평등이 존재할 수 없게끔 한다고 주장한다(Tronto, 2014: 195).

두 번째로, 이중빈곤연구의 문제의식은 특히나 개인단위 분석의 필요성에서 알 수 있듯, 이중빈곤이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여성, 특히 저소득층 여성이 취약함을 지적함에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서 과도하게 일하며,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포함한 총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빈곤에 취약한 집단이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 맞벌이 여성은 시간과 소득 빈곤에 모두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이다(Memis and Antonopoulos, 2010; 유성용, 2008). 시간빈곤과 이중빈곤 현황을 조망하는 작업은 이들이 처한 빈곤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에게 부과된 이중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당위를 제공한다. 이는 고소득층 여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소득 여성은 대체로 직업적 특성에 따라 자발적 의사로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가구 내 성별분업은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돌봄을 맡기기에 이들 역시도 시간빈곤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sup>6)</sup>

이러한 이중부담과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언급되는 요인은 가사노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돌봄이다. 여성이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에게 과중한 가사노동을 부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은 시간빈곤·이중빈곤의 연구자들이 돌봄의 불평등한 부담을 현상의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빈곤연구의 정책 논의 중 하나가 유배우 여성가구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접근권 확대에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많은 시간빈곤·이중빈곤연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존재 여부가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노혜진·김교성, 2010; 오혜은, 2017;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Bardasi and Wodon, 2010). 예를 들어 캐나다의 시간사용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는 아이가 1명일 때에 비하여 2명 이상인 경우 6시간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계산하였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25~45세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지적 역시 젠더화된 돌봄이 여성의 시간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국내 사례로 절대적 정의를 적용한 경우, 여성생계부양 가구

---

자기돌봄(taking-care-of-my-own)형 무임승차와 자조(bootstrap), 자선형 무임승차를 지적하는데, 이러한 무임승차 형태들은 스스로를 돌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스스로 돌봄을 하거나 자원을 통해 돌봄을 구매하는 행위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정당화 하는 것은 특권적 무책임(privileged irresponsibility)으로, 이는 노동분업과 사회적 가치가 일부 개인에게 자신들은 좀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에 기본적인 돌봄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6) 이러한 점에서 일부 시간빈곤연구자들은 개인에게 남은 자유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재량시간은 잔여적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통제가능한 시간이다. 이에 대해서는 Goodin, Parto & Eriksson(2008)을 참조.

의 빈곤비율이 체계적으로 높다. 전체가구 및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도 맞벌이 가구에 비하여 무배우자 남성생계부양 가구 및 유·무배우자 여성생계부양 가구는 소득빈곤일 확률이 증가하는 동시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시간빈곤 내지 이중빈곤일 가능성이 증가하며, 미취학 자녀의 존재 역시 모든 유형의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노혜진·김교성, 2010: 179-180).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상대적 방식을 적용한 경우도 여성이 시간빈곤 내지 소득빈곤에 속할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20.9% 가량 높고, 유배우자 여성이 무배우자 여성에 비하여 19% 가량 높다는 점, 배우자 및 5세 이하의 자녀가 소득빈곤·이중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여성가구주일 때 시간빈곤 확률이 증가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소득빈곤 확률이 감소하고, 여성무배우자는 이중빈곤일 확률이 높다. 가구원수가 증가할 때 시간빈곤 확률도 증가하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돌보아야 하는 구성원 역시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오혜은, 2017: 180-181).<sup>7)</sup>

한편 이중빈곤 논의에서 “시간조정 소득빈곤(time adjusted money poor)”은 돌봄의 시장화 문제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는 현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사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함에 따라 소득빈곤에 빠지는 경우를 의미한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70-73). 캐나다의 1998년 시간사용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경우 분석대상의 약 1.6%가 시간조정 소득빈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06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는 약 10.8%가 시간조정 소득빈곤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간조정 소득빈곤의 결정에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자녀돌봄이 시장에서 구매하는 서비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노혜진·김교성, 2010: 175-182).

정리하면, 이중빈곤연구는 직접적으로 돌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봄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불평등의 재생산, 돌봄의 젠더화로 여성과 저소득층에게 편중되는 시간빈곤·이중빈곤의 문제 등에서 돌봄 관점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돌봄 불평등, 젠더화된 돌봄과 시장화된 돌봄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국내 이중빈곤연구의 주요한 정책적 제안은 1) 일을 통한 탈빈곤을 강조하는 정책에 대한 재고, 2) 유배우 여성가구주의 시간빈곤 개선을 위한 공공 보육서비스 접근 확대, 3) 여성일자리의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노혜진·김교성, 2010: 184; 오혜은, 2017: 182).

첫 번째 대안의 이유는 낮은 교육수준, 고연령, 무배우자 가구와 같이 소득빈곤에 취약한 특

7) 가구원 수와 빈곤확률에 대한 이 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의 증가는 가구 내의 과업을 배분할 사람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가구원수의 증가가 시간빈곤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Burchardt, 2008; Bardasi and Wodon, 2010). 오혜은(2017)의 상반되는 분석 결과는 결국 가구원 수보다 성역할과 같이 가구 내의 과업 배분을 결정하는 가족 내의 규범적·문화적 요소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성들이 시간빈곤의 위험성 역시 높다는 점에서 소득과 시간이 상충되지 않는 집단에게 무분별하게 임금노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시간조정 소득빈곤으로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노혜진·김교성, 2010: 183). 근로복지정책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노동시간의 증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간빈곤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후자의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가구 유형에게는 실질임금의 상승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유효한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여성가구주가 시간빈곤·이중빈곤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무배우자와 유배우자의 상황을 비교한 논의이다. 이중빈곤의 위험성은 무배우자 여성에게서 더 높지만, 자녀돌봄 시간은 유배우자가 1일 평균 약 91.4분으로 무배우자의 21.9분에 비하여 더 높다(오혜은, 2017: 175).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공공돌봄서비스에서 우선권을 갖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실질적 생계부양자여도 이러한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으로 인하여 남성배우자가 가사·육아시간 감소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오혜은, 2017: 182; 유성용, 2008; 김진욱·고은주, 2015: 154-156). 유사한 맥락에서 노혜진·김교성(2010) 역시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유배우자 여성의 시간빈곤·이중빈곤 양상이 드러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된 유배우자 여성 생계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노혜진·김교성, 2010: 184). 세 번째 대안은 여성, 특히 무배우자 여성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 등 저소득 일자리이고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월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배우자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지원 정책으로 고용촉진 장려금 증액,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노동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오혜은, 2017: 182).

이상의 대안들은 분명 돌봄의 시각에서도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여성 유배우자의 평균적인 돌봄시간이 길다는 사실에서 이들에 대한 공공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 간의 평등한 돌봄시간 보장을 위해 의미가 있다. 또한 앞서 폴브레가 지적한 미국 돌봄산업의 현황과 유사하게 한국도 교육, 의료 및 사회복지 등 돌봄 산업의 여성 노동자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여성 비중은 42.72%이지만 교육서비스의 경우 전체의 약 67.94%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80.37%가 여성 노동자이다(통계청 2019). 이 점에서 여성일자리 노동조건 개선은 곧 돌봄 노동의 평가 제고와 시장화 된 돌봄의 여건 개선이라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

요약하건대, 지금까지 살펴본 이중빈곤연구의 문제제기와 빈곤의 측정 절차, 주요 연구 내용 및 정책적 제안은 직접적으로 돌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제기 측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과 시간빈곤 문제를 연결하는 점, 기존의 소득 중심

불평등 연구가 다차원적 빈곤으로 인한 불평등 재생산 문제를 조명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점에서 돌봄의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관점, 즉 돌봄의 젠더화·시장화된 제공방식 및 돌봄 불평등의 재생산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러한 돌봄의 젠더화·시장화된 제공방식과 돌봄 불평등의 문제를 시간·소득의 빈곤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 여성에게까지 공공돌봄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이중빈곤연구의 주장은 돌봄의 문제를 공적인 정책적 이슈로 넓혀야 한다는 돌봄 관점의 세 번째 문제의식에 당위를 제공하여준다. 또한 여성일자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주장 역시 (여성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돌봄과 관련 된다는 점에서) 저평가된 돌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두 번째 돌봄 관점에 의미가 있다.

#### 4. 돌봄 관점에서 본 이중빈곤연구의 한계

이중빈곤연구의 내용과 정책적 대안은 앞에서 설명하였듯 돌봄에 있어 일정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과정 내에서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두 번째, 남녀 간 보다 평등한 돌봄의 강조의 필요성, 세 번째, 돌봄을 노동 이후의 잔여적인 것이 아닌 자체로서 돌봄의 시간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등이다.

첫 번째 문제는 연구의 문제제기와 결론에 비하여 연구과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돌봄이 면밀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돌봄 관점에 대하여 논의한 2장의 첫 번째 사항으로서, 돌봄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천이자 활동이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돌봄은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개인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사노동과 다르다. 따라서 가구 내의 시간활용에 있어서도 필연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가, 혹은 선택적일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 돌봄은 일반적인 가사노동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필요시간이 개인유지를 위하여 가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 역시 돌봄 없이는 취약한 다른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가사노동보다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시간활용조사는 가구노동을 “자녀에 대한 돌봄,” “(노인, 몸이 불편한 사람과 같이)자녀 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그 외 가사노동”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간빈곤·이중빈곤 연구에서 돌봄은 가사노동의 하위범주로 묶인다. 배우자와 자녀 유무 등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성별 배우자 유무에 따른 활동별 1일 평균 시간을 살펴보거나, 자녀유형에 따른 시간

결핍 수준이 논의된 바는 있으나(오혜은, 2017: 175; 김진욱·고은주, 2015: 148-151), 가구 간 돌봄 차이와 빈곤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실증적인 연구에 있어 변수의 일정한 요소가 간략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돌봄을 위한 일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유무와 자녀 수,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가구의 돌봄 상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분석과정 내에서 돌봄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사용 자료는 대체로 돌봄시간에 대한 양적 정보만을 제공하며 질적인 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가구 유형 간 돌봄시간 차이, 자녀 수와 연령대에 따른 돌봄시간의 변화 및 빈곤유형에 따른 돌봄시간 분포 등을 보여주는 작업만으로도 결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적 함의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사례를 통한 연구는 자녀 1명의 증가가 주당 6시간의 돌봄시간 증가를 초래하며, 비커리의 연구는 시간빈곤선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1명, 2~3명, 4~5명, 6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69; Vickery, 1977: 320).

[표 1] 빈곤유형별 본인의 돌봄시간과 배우자의 주당 돌봄시간

(단위: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빈곤	돌봄시간		84.21	107.03	0	660
	배우자 돌봄시간	596	169.58	165.27	0	900
	가구 돌봄시간		253.79	197.42	30	1260
소득빈곤	돌봄시간		73.54	90.70	0	450
	배우자 돌봄시간	93	186.45	184.77	0	900
	가구 돌봄시간		260	200.43	30	1020
시간빈곤	돌봄시간		101.80	114.59	0	960
	배우자 돌봄시간	422	160.45	196.22	0	1260
	가구 돌봄시간		262.25	218.75	30	1260
이중빈곤	돌봄시간		97.09	107.39	0	570
	배우자 돌봄시간	55	223.09	218.08	0	810
	가구 돌봄시간		320.18	247.32	30	1170
전체	돌봄시간		90.28	108.92	0	960
	배우자 돌봄시간	1,166	170	181.51	0	1260
	가구 돌봄시간		260.28	208.34	30	1260

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15)을 기초로 저자 작성

이 점에서 [표 1]은 빈곤유형별 개인의 돌봄시간과 배우자 돌봄시간, 가구의 돌봄시간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17차년도(2014년) 자료의 시간활용 부가조사자료에서 자녀 및

자녀 외 가족 돌봄시간을 합하고 가구 정보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활용시간에 배우자의 활용시간을 병합한 후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돌봄시간은 응답자 본인의 돌봄시간이며, 배우자 돌봄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돌봄에 헌신하는 시간이고 가구 돌봄시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돌봄시간을 합한 값이다. 원 자료 11,868명 중 19세 미만 61세 이상은 제외하였으며 소득 및 자유시간의 중위값 60%이하라는 상대적 정의로 빈곤유형을 계산한 결과 4,240명의 빈곤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후 미혼이면서 자녀 및 돌볼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166명을 토대로 한 계산 결과이다.<sup>8)</sup>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빈곤 유형의 가구 돌봄시간이 하루 320.18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중빈곤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 및 낮은 임금과 소득원 구성으로 인한 측면 외에도, 가구구성 특성으로서 돌봄수혜자의 수와 그들의 특성이 이중빈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위의 계산은 성별과 주소득자를 분류하지 않은 점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빈곤유형 간 돌봄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비빈곤과 소득빈곤은 본인의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시간빈곤은 배우자의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본인의 돌봄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여성이 상대적으로 시간빈곤에 취약하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연관지어보면, 시간빈곤·이중빈곤 여성의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구 내 성별분업에 관한 이중빈곤연구의 시각과 관련된다. 국내의 이중빈곤연구는 남녀 간 불평등한 시간 배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유배우자 여성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현재 공공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다른 돌봄 관련 정책지원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 생계부양가구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이 시간빈곤·시간조정 소득빈곤에 빠질 위험성은 모두 동일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으므로 유배우자 여성생계부양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3장의 말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분명 여성 간 돌봄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은 이중빈곤의 근본 원인인 가구 내 남녀 간 성별분업의 문제점 지적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다. 가구 내 성별분업과 여성에게 가해진 이중부담이 시간빈곤·이중빈곤의 원인이라면 공공돌봄서비스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유배우자 가구 내에서는 남성 배우자와 돌봄 및 가사노동을 나누어 시간빈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가 있다(송다영·백경훈, 2018). 특히 맞벌이 가구 여성에게는 공평한 돌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무배우자 여성생계부양 가구에 국공립 보육시설 접근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배우자가 없어

8) 따라서 미혼이지만 자녀 혹은 다른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와 사별 내지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음에도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는 포함된 표본이다.

돌봄과 가사, 유급노동을 전적으로 혼자 하여야 하는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하여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보육시설 확대가 여의치 않은 경우, 우선권은 유배우자 여성보다 취약성이 심각한 무배우자 여성에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배우자 여성에 대한 공적 돌봄지원확대라는 기존 주장은 가구 내 남성의 적극적인 돌봄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구 내 ‘함께 돌봄’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돌봄문제를 탈가족화하지만 탈젠더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안은 가구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돌봄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것이며, 외부로 이전된 돌봄서비스를 대체로 여성이 맡는다는 점에서 돌봄의 젠더화로 재귀되는 결과를 낳는다(송다영·백경훈, 2018: 211-212). 결과적으로 가구 내 여성의 돌봄을 가구 바깥 여성의 돌봄으로 옮기는 대안 밖에 되지 않는다.

돌봄이 모든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실천이자 활동이며, 수혜와 의무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돌봄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대안은 유배우자 여성의 시간부담 경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이다. 돌봄에 관련된 정책적 지향은 사적·공적인 영역에서 성별에 관계없는 공평한 돌봄이 되어야 한다. 유배우자 여성 가구의 공적 돌봄확대보다 가구 내 남성의 돌봄참여가 가구 외에서의 돌봄분담 역시 공평하게 하는 동시에 이는 돌봄이 여성의 노동이라는 통념에서 비롯되는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적인 이슈로서의 돌봄을 다루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제안은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표 2] 성별 빈곤유형에 따른 가구내 돌봄분담률

(단위: %)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성	비빈곤	459	27.76	33.64	0	100
	소득빈곤	74	23.15	33.23	0	100
	시간빈곤	233	27.06	32.68	0	100
	이중빈곤	39	23.90	30.45	0	100
	전체	805	27.04	33.23	0	100
여성	비빈곤	137	70.43	35.20	0	100
	소득빈곤	19	93.86	18.60	33.33	100
	시간빈곤	189	78.63	28.94	0	100
	이중빈곤	16	79.69	30.06	0	100
	전체	361	76.37	31.52	0	100

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15)을 기초로 저자 작성

가구 내 돌봄분담의 편중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2]는 성별과 빈곤유형에 따른 가구 내 돌봄시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돌봄시간 비중은 “본인의 돌봄시간(Cp)+배우자의 돌봄시간(Cs)”으로 구성된 가구 돌봄시간(Ch=Cp+Cs)에서 본인의 돌봄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다( $Cr=Cp/Ch*100$ ). 편의상 앞으로 이를 돌봄분담률이라고 하겠다. 이는 가구 내 성별 돌봄분업을 보여주는 지표(proxy)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확인가능한 것은 첫째,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남성과 여성의 돌봄분담은 여성에게 치우쳐져있으며 이는 대략 25:75정도이다. 둘째, 남성의 경우 빈곤유형에 관계없이 돌봄률이 23~27%내외로 그 분산이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적은 경우 비빈곤 여성이 70%이고 많은 경우 소득빈곤 여성이 94%까지 그 편차가 크다. 흥미로운 점은 비빈곤 유형 여성의 돌봄분담률이 70.43%로 빈곤 여성에 비하여 낮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대체로 비빈곤 여성은 유배우자 남성부양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다(노혜진·김교성, 2010: 175; 오혜은, 2017: 178). 상대적으로 빈곤 여성은 (유·무배우자) 여성가구주의 생계부양 가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성 생계부양 가구는 남성이 유급노동을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는 남성이 주된 유급노동을 여성이 부업과 가사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가구 내 분업이 이루어짐으로서 비빈곤 여성이 가사노동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득빈곤·시간빈곤·이중빈곤 여성의 가구 내 돌봄분담률이 높다는 점은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무배우자 여성 생계부양가구의 가구형태로 인한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제활동이 없거나 여성배우자보다 경제활동이 적은 유배우자 여성부양가구의 남성이 돌봄부담을 적극적으로 맡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과 시간 조합에 있어 남성은 돌봄의 영향이 적은 반면 여성은 돌봄으로 인한 빈곤에 취약하다. 이는 가구 내 성별분업 구조가 돌봄시간에서 극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젠더화된 돌봄분담률과 빈곤 여성의 높은 돌봄분담 비중은 돌봄의 사회화와 더불어 가구 내의 돌봄분담 역시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함께 돌봄'이 가구 내에서부터 실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내의 돌봄을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개인과 공동체의 존속 및 유지 위해 돌봄을 주고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가구 내의 돌봄 활동은 공적인 문제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시간과 소득에서의 부담이라는 점에서도 돌봄은 공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가구 내 돌봄의 탈젠더화 주장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공적인 정책적 지향이며, 남녀의 '함께 돌봄'이 가구 내에서 실현되는 것은 사회적인 '함께 돌봄'에도 친화적인 주장이다. 이중빈곤연구의 함의가 가구 내·외부에서 모두 여성의 시간빈곤 완화와 남녀의 공평한 시간배분이라면, 돌봄 역시도 가구 내·외부에서 공평하게 배분되고 부담 역시 동일하게 완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이중빈곤연구에 전제된 돌봄에 대한 잔여적 시각이다. 즉, 논의된 정책 대안이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자리의 개선에 있어서도 여성일자리의 저임금 및 고용상 지위의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국내의 이중빈곤연구만이 아니라

Vickery(1977) 및 Bardasi and Wodon(2006), Harvey and Mukhopadhyay(2007)와 같은 대표적인 이중빈곤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시간빈곤·이중빈곤연구의 질문과 답변은 “그래서,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돌봄의 영역만이 아니라 유급 노동의 영역에서도 강조점은 여성일자리의 저임금 해소에 있다. 이는 시간빈곤·이중빈곤의 위험이 여성에게서 더 높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빈곤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구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노동여건 개선에 있어 정책적 논의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일자리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남성 일자리 역시 돌봄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출산휴가 및 보육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중빈곤·시간빈곤 여성의 배우자 경제활동 상태와 돌봄참여 여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남성근로자 역시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모색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아파 할당제의 시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부성휴가의 확대와 소득 대체율의 증가, 유연근무제의 남성 참여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함으로써 가구 내 돌봄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적 영역에서 남성 돌봄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는 여성일자리에 남성이 참여하는 것이다. 돌봄 관점에서 비판하는 젠더화된 돌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돌봄일자리의 계도화를 해결하고 사적·공적 영역에서의 ‘함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 산업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장기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직종 분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송다영·백경훈, 2018). 이중빈곤·시간빈곤의 원인이 불평등한 가사 내 시간배분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는 가사노동과 가구 내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가구 내 돌봄의 불평등한 배분이, 이차적으로는 가구 외의 돌봄에서의 불평등한 배분 및 돌봄 외 유급노동에서의 불평등한 배분과 얽혀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중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치는 유급노동, 가구 외부의 돌봄노동, 가구 내의 돌봄 세 가지 영역에서의 공평한 배분을 요구해야하며, 이것이 돌봄 관점이 강조하는 사적·공적인 영역에서의 ‘함께 돌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문제제기와 결론에서 돌봄이 언급됨에도 연구과정에 있어 돌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돌봄의 남녀 간 배분을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시간빈곤·이중빈곤연구가 실제로는 돌봄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가령 다음의 문장을 보자(노혜진·김교성, 2010: 184):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빈곤정책에서는 임금노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돌봄의 결핍이나 시간충돌(time crunch)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한편 돌봄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돌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집단을 무임승차자로 지칭하며 돌봄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Campbell, 2006).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역시 돌봄노동의 수행이 임금노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 혹은 강도 높은 노동환경이나 젠더화된 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언급은 돌봄을 공공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임금노동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시각을 함축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가? 오히려 이는 ‘돌봄의 사회화’를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돌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아니라 가구 외부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아닌가? 또는 돌봄과 유급노동을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거나 돌봄을 유급노동의 잔여적 시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한정된 시간 내에서 과업을 배분하는 문제가 시간빈곤의 원인이라면 돌봄을 사회화하는 과정은 시간빈곤 문제를 경감하는 가장 좋은 대안일 수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가 빈곤과 젠더화된 불이익에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역으로 공적 돌봄이 충분치 못한 결과는 아닌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중빈곤연구에서 돌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5. 결론

이 글은 이중빈곤연구의 내용을 소개하고 돌봄의 관점에서 그 의의와 돌봄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돌봄 관점은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에서 돌봄이 모든 인간 삶에 필수적인 실천이자 활동이라는 점,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돌봄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 돌봄을 제공하므로 돌봄은 사회적이고 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함께 돌봄’을 위하여 돌봄의 젠더화와 시장화, 돌봄 불평등을 비판한다. 이중빈곤연구는 불평등의 심화와 재생산을 비판하고, 빈곤한 사람이 주로 여성과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돌봄 불평등과 젠더화를 비판하는 돌봄 관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유배우자 여성에 대한 공적 돌봄확대를 주장하는 점, 돌봄노동이 주를 이루는 여성일자리의 개선을 강조했다라는 점 등에서 ‘함께 돌봄’ 및 좋은 돌봄을 논의하기 위한 토양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돌봄 친화적인 이중빈곤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제제기와 정책적 대안에서 돌봄의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연구과정 내

에서도 돌봄이 보다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의 원인인 남녀 간 시간의 불평등한 배분을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돌봄 분업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문제삼아야 한다. 셋째, 유급노동의 영역에서도 여성일자리의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남성 일자리가 돌봄 친화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돌봄이 기존에 제공되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sup>9)</sup> 물론 이중빈곤 연구가 돌봄이론의 문제제기와 동일한 관점에서 시작된 연구는 아니기에 돌봄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빈곤연구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는 이중빈곤연구와 돌봄이론이 주된 대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돌봄의 관점을 이중빈곤연구에서 고려하는 작업이 이중빈곤연구 및 돌봄의 논의를 다양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빈곤유형별 돌봄시간 분포와 성별 돌봄분담률과 같이 이중빈곤연구에서 돌봄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적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이중빈곤 유형일수록 가구 내 돌봄시간이 길고 여성의 돌봄분담률이 높은 동시에 가구유형에 따른 취약성 역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논리와 지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면 변수의 측정과 모형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간략하게 다룬 결과도 이중빈곤의 원인과 대안에 있어 돌봄을 보다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계층에 따른 남녀의 돌봄분담, 돌봄시간의 양적, 질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돌봄이론의 다섯 가지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도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돌봄지원에 대한 제한적 언급은 이중빈곤연구조차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비하여 돌봄을 잔여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중빈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남자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공적인 저항을 표출하는” 정책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Ruddick, 2002: 378).

9) 물론 모든 이중빈곤 연구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 시간의 계층별 차이에 주목한 노혜진(2014a, 2014b), 서지원(2015)의 연구는 학력과 소득에 따라 돌봄 시간 사용의 양과 질에서 계층적 차이가 있고 남녀의 돌봄분담 역시 계층화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아직까지 돌봄 친화적인 이중빈곤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여겨지며, 돌봄과 다차원적 빈곤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보다 다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고미숙(역)(2018). 배려와 도덕교육. Noddings, N. *Educating moral people*. (2002).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옥·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김희강(2016). 규범적 정책분석. 서울: 박영사.
- \_\_\_\_\_ (2018). 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52(2). 201-224.
- 김희강·나상원(역)(2014). 돌봄 민주주의. Tronto, J.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2013). 서울: 아포리아.
- \_\_\_\_\_ (2016). 돌봄: 사랑의 노동. Kittay, E. *Lover's labor*. (1999). 서울: 박영사.
- \_\_\_\_\_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Engster, D. *The heart of justice*. (2007). 서울: 박영사.
- 노혜진·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 \_\_\_\_\_ (2014a).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 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 \_\_\_\_\_ (2014b). 부모의 교육적 동질성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2). 181-200.
- 백경훈·송다영·장수정(2017). 돌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한국가족복지학*. 57. 183-215.
- 서지원(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7-103.
- 송다영·장수정·백경훈(2017). '민주적 돌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0(1). 121-152.
- 송다영·백경훈(2018). 사회적 돌봄 부문으로의 남성참여 확대를 위한 시론적 연구: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4). 207-238.
- 오혜은(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빈곤에 관한 연구: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 유성용(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28-62.
- 윤자영(2018a).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월간 복지동향. 233. 13-19.
- 윤자영(2018b).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25(2). 31-55.
- 윤자영(역)(2007). 보이지 않는 가슴. Folbre, N. *The invisible heart*. (2001).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이혜정(역)(2002). 모성적 사유: 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Ruddick, S. *Maternal thinking*. (1995). 서울: 철학 과학실사.
- 통계청(2019). 전국 산업/성별 취업자(소분류, 2018년 상반기).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1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1S&conn_path=I3)
- 한국노동연구원(2015).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년도 조사 자료 및 부가조사 자료. <https://www.kli.re.kr/klips/selectBbsNttList.do?bbsNo=50&key=163>
- 허란주(역)(1997). 다른 목소리로.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1984). 서울: 동녘.
- Ås, D. (1978). Studies of time-use: problems and prospects. *Acta Sociologica*. 21(2). 125-141.

- Atkinson, A. (2003).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contrasting social welfare and counting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 51-65.
- Bardasi, E. and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in Blackden, C. and Wodon, Q. (eds.)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73. 75-95.
- \_\_\_\_\_. (2010). Working long hours and having no choice: time poverty in guinea. *Feminist Economics*. 16(3). 45-78.
- Bittman, M. (1999). Social participation and family welfare: the money and time cost of leisure. SPRC Discussion Paper. 95.
- Burchardt, T. (2008). Time and income poverty. CASereport 57.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 Chatzitheochari, S. and Arber, S. (2012). Class, gender and time poverty: a time-use analysis of british workers' free time resourc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3). 451-471.
- Douthitt, R. (2000). Time to do the chores? factoring home-production needs into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1). 7-22.
- Folbre, N. (2004). A theory of misallocation of time. In Folbre, N. and Bittman, M.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London: Routledge.
- Goodin, R., Rice J., Parpo, A. and Eriksson, L. (2008).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ermesh, D. and Lee, J. (2007).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2). 374-383.
- Harvey, A. and Mukhopadhyay, A.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 Kalenkoski, C. and Hamrick, K. (2013). How does time poverty affect behavior? a look at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5(1). 89-105.
- Kes, A. and Swamiethan, H. (2006). Gender and time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In Blackden, C. and Wodon, Q (eds.).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73. 13-32.
- Kittay, E. (2018). Precarity, precariousness, and disability. A paper presented at the SSK colloquium of Korea University. Nov. 30. 2018.
- Lee, S. (2009). Working-hour gap: trends and issues. in Messenger, C. (eds.). *Working time and workers' prefere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finding and bala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9-59.
- Memis, E. and Antonopoulos, R. (2010). Unpaid work, poverty and unemployment: a gender perspective from South Africa. In Antonopoulos, R and Hirway, I. (eds.). *Unpaid Work and the Economy*, Palgrave: Macmillan. 76-111.
- Merz, J. and Rathjan, T. (2009). Time and income poverty: an interdependent multidimensional poverty approach with german time use diary data. IZA Discussion Paper. 4337.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 Knopf Publishers.
- Vickery, C. (1977). The time-poor: a new look at poverty. *Journal of Human Resource*. 12(1). 27-48.

Warren, T. (2003). Class-and gender-based working time? time poverty and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ur. *Sociology*. 37(4). 733-752.

Zilenawela, A. (2013). *Women's time poverty: differences by family structure, employment, and gender ideology*.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Abstract ▶

## Examining dual poverty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Young-Min Shin\* & Hee-Kang Ki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xisting studies of dual poverty of time and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In general, dual poverty studies concern issues such as multiple inequalities, the double burden imposed on women, the improvement of women's jobs that occupy a considerable portion of care work, and the expansion of care-support for female spouses. In this regard, dual poverty studies seem to have some positive insights not only to the time & inequality research but also to that of care. However, in order the existing dual poverty studies to be further care-sensitiv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y need to take care into consideration more systematically in the analytical process of dual poverty as well as their policy implications. Also,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xisting dual poverty studies should be able to criticize the current way how care is merely treated as a residual issue. To conclude, while proposing the care-time/care-burden ratio by the type of household as an idea of analysis, it argues for the extension of 'caring-with' and socialization of care as the effective solutions for time and/or dual poverty.

**Key words:** dual poverty, time poor, care theory, caring-with, care burden ratio

◆ 2019. 1. 17. 접수 / 2019. 4. 2. 1차수정 / 2019. 4. 3. 게재확정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ymshin@korea.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heekangkim@korea.ac.kr)